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59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이용우·박해철·정혜경

김문수 • 박지원 • 이수진

김태선 • 김 유 • 장종태

이광희 · 이강일 · 이학영

한창민 · 백승아 · 정진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

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상임금"이란 재직, 근로기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1.∼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통상임금"이란 재직, 근로기
	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 조건
	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
	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
	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
	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u>7.</u> ~ <u>9</u> . (생 략)	<u>8</u> . ~ <u>10</u> . (현행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